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2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임오경·김남근·김재원

박수현 • 한민수 • 박 정

서영교 · 차지호 · 민병덕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 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 임.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협조함(안 제9조제1항 신설).
- 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이를 제한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 ·서면 등을 통해 통보함(안 제9조제3항 신설).
- 다.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1항의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신청 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3.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제3항을 적용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제1항의 학교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 법」,「고등교육법」 각 제2조 의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 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이 학 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 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 는 곳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 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 여야 한다.

-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1항의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3.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한 경우
- 5.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생활 체육시설로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 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학교시설을 생활체 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 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민 법」 제758조제3항을 적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 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제1항 의 학교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